국립국어원 2023-04-0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67-0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이 길잡이는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적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I.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념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세부 내용
(1) 자격의 등급 및 기준 3
(2) 자격의 취득 및 신청 구분 4
(3) 자격 부여 절차 6

II. 개인 자격 부여

자격 부여 신청 절차 10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1) 등급 및 유형 구분 11
(2)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13

부 록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34
부록 2 자주 하는 질문 57
부록 3 한국어교원 관련 누리집 70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념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세부 내용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7. 28.)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법정 요건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자격 부여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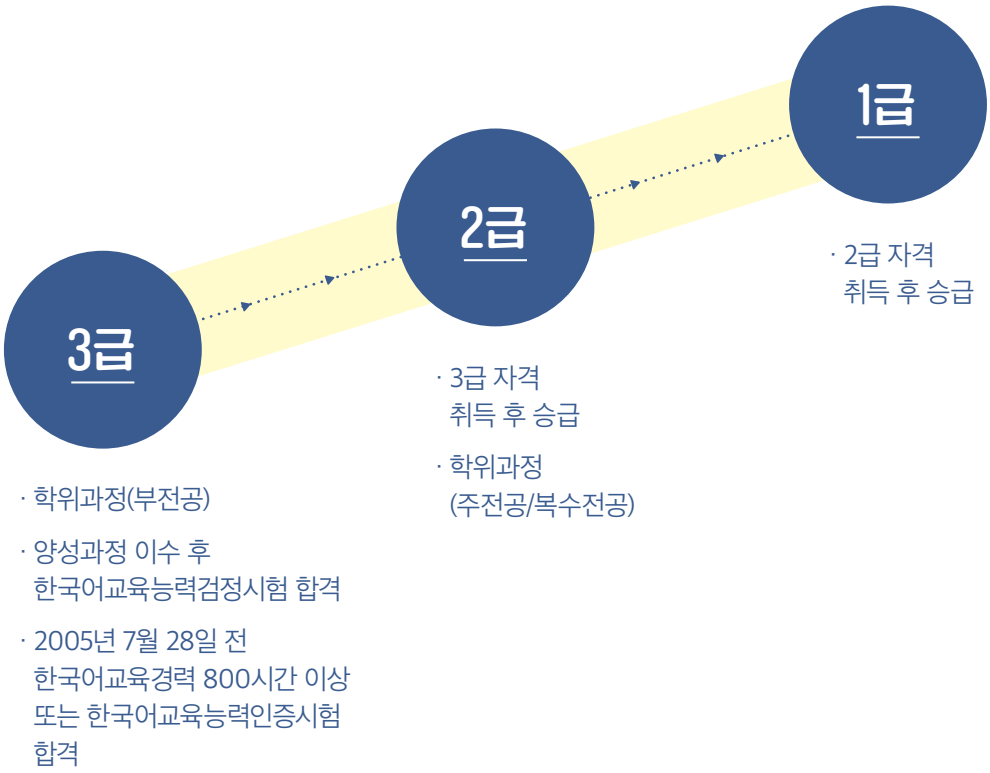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세부 내용

(1) 자격의 등급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됨.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음.

※ 최초 법령 시행 전(2005. 7. 28.) 이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로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육 경력 등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 취득 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준도 존재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임.

※ 상세 기준에 관해서는 'II장 개인 자격 부여'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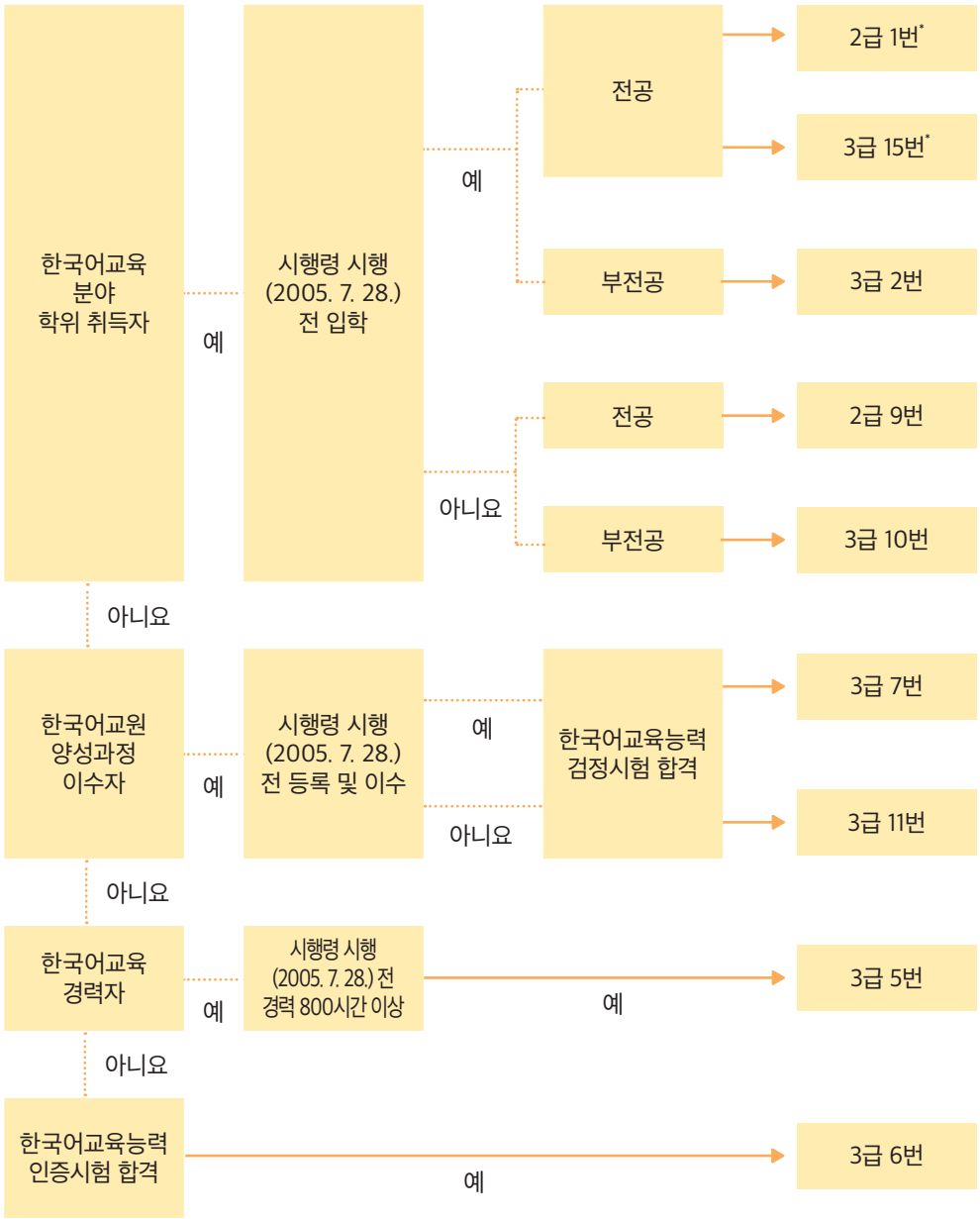
(2) 자격의 취득 및 신청 구분

자격의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뉨.

- **일반 취득**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 **승급**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3급 → 2급, 2급 → 1급) 자격 취득

신청 구분

- **일반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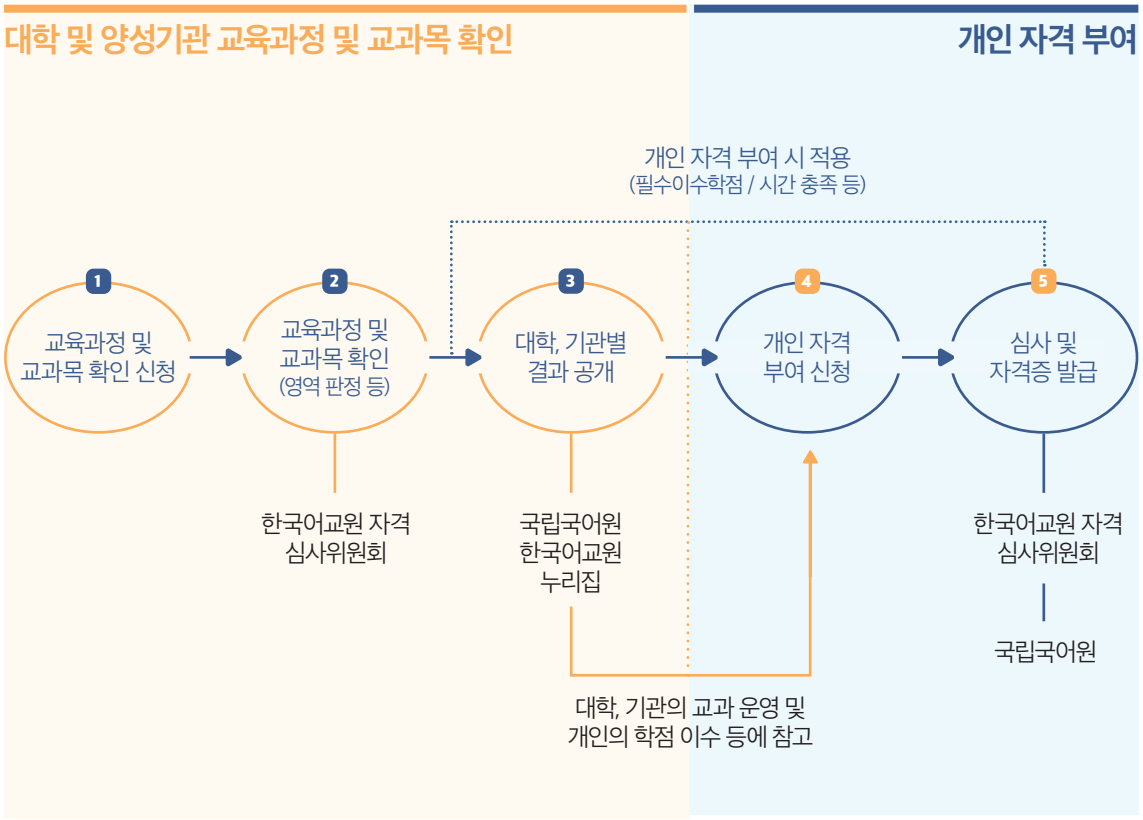
* 2급 1번, 3급 15번은 학위 취득 당시 이수 학점에 따라 신청 구분
세부 기준은 '11장 개인 자격 부여' 19~20쪽 참조

• 승급

기존 2급 취득자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강의	→ 1급 12번
학위 취득에 의한 기존 3급 취득자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3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강의	→ 2급 13번
학위 취득 외의 요건에 의한 기존 3급 취득자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강의	→ 2급 14번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관련 세부 기준은 ‘II장 개인 자격 부여’ 27~28쪽 참조

(3) 자격 부여 절차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해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을 부여함.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의 적정 교육과정·교과목 이수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교과목의 기준 적합 확인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함.

참고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 **개인 자격 부여: 연 3회**
 (1차: 3월 초~4월 말, 2차: 8월 초~10월 말, 3차: 12월 초~다음 해 1월 말)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연 2회**
 (1차: 1월 초~2월 말, 2차: 6월 말~8월 말)

※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s://klp.korean.go.kr/certif) '알립니다'에서 확인 가능

참고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 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참고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함.

 【주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주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 시험 일정: 연 1회 (1차(필기)시험: 8~9월 / 2차(면접)시험: 11~12월)

-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필기) 시험	2차(면접) 시험
■ 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한국문화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1차 합격 기준 -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면접 내용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 한국어능력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성 및 소양

※ 상세한 시험 일정 및 기출문제 정보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https://www.q-net.or.kr/site/koreanedu)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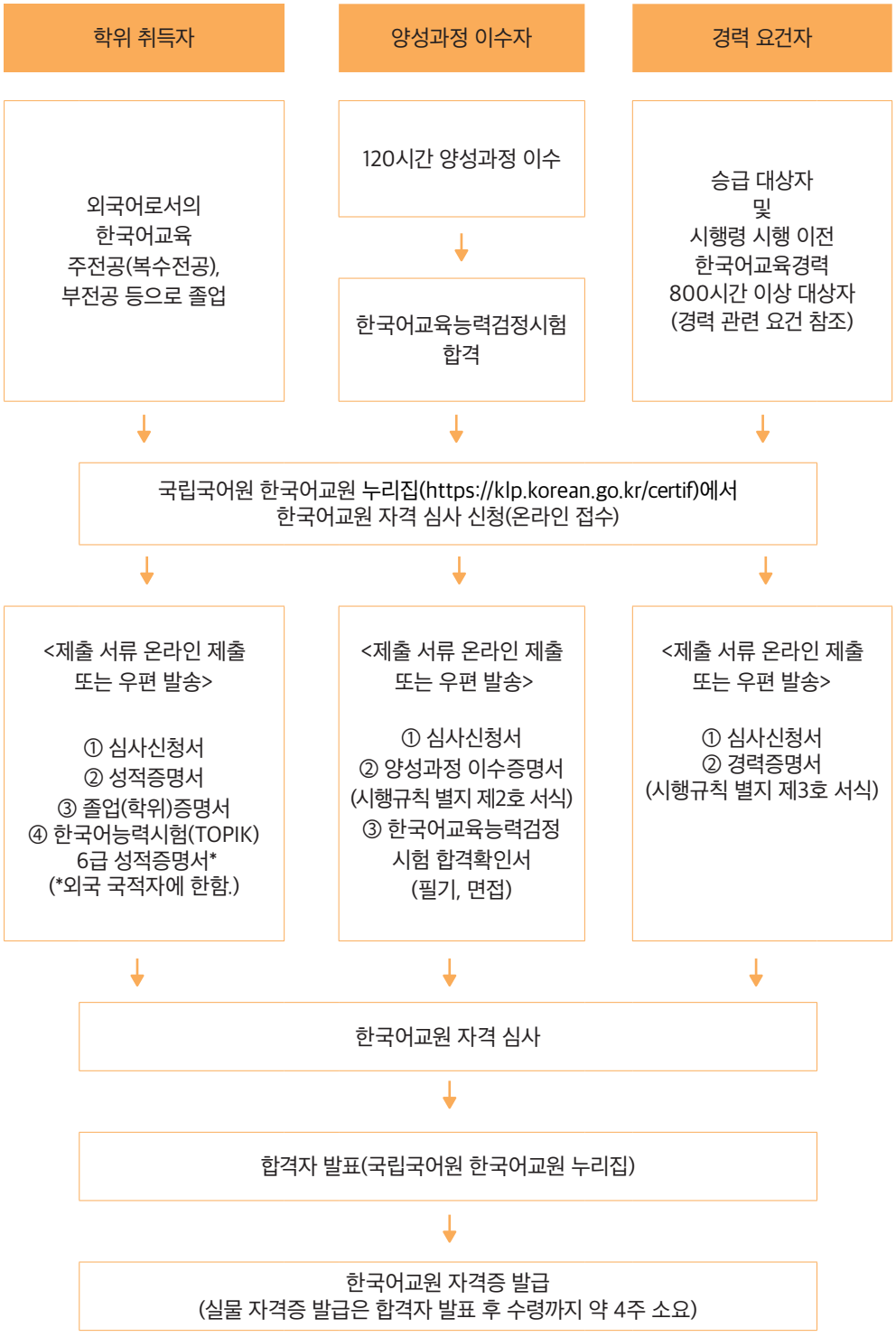
개인 자격 부여

1. 자격 부여 신청 절차
2.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II

자격 부여 신청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신청 절차 흐름도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1) 등급 및 유형 구분

가. 일반 취득

2005. 7. 28. 이후 대학(원) 등 입학자 및 양성과정 이수자

조건	등급	유형	참고	자주 하는 질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9번	13~16쪽	57~60쪽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10번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11번	17~18쪽	61~63쪽

2005. 7. 28. 전 대학(원) 입학자 또는 경력 요건자 등

조건	등급	유형	참고	자주 하는 질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1번	19~20쪽	57~60쪽
	3급	15번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2번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3급	5번	21쪽	64~65쪽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6번	22쪽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7번	23쪽	61~63쪽

* 학위 취득 당시 이수한 학점에 따라 2급 1번 또는 3급 15번으로 신청 등급이 구분됨.

나. 승급

조건	등급	유형	참고	자주 하는 질문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1급	12번	24~28쪽	64~65쪽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3번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4번		

(2)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가. 일반 취득

2005. 7. 28. 이후
대학(원)에 입학(학점은행제 포함)한 학위 취득자

대상

-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 등급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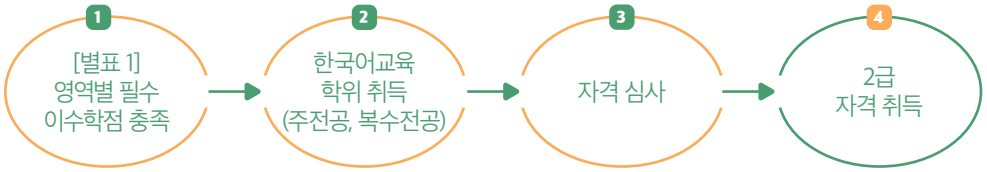
등급 및 유형	조건
2급 9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10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 취득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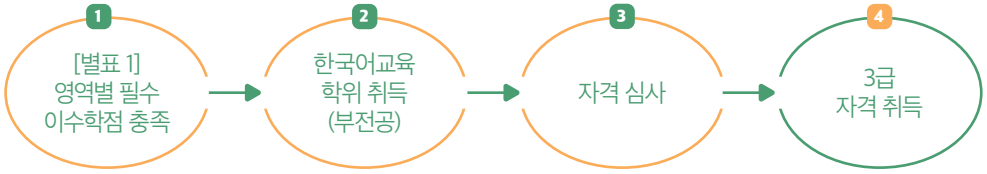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자격 취득 절차

• 2급 9번



• 3급 10번



세부 심사 기준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	학사 학위 취득자		석·박사 학위 취득자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2급	3급	2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5. 한국어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합 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

기준 적용 해설

- 개인 자격 부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함.

 【주의】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생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반드시 교과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해야 함.

 ※교과목 확인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lp.korean.go.kr/certif) '교육기관 - 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하여야 함.

 ※ 수강한 과목명과 심사받은 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미심사 과목으로 분류되어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일한 학위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함.

 ※ 선수 과목 및 보충 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이 명시되어야 함(교과목명 및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 가능).

 ※ 학점교류기관에 개설된 한국어교육 전공도 교육과정 및 교과목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부전공 과정은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함.

- 전과 또는 편입학을 한 경우, 전과한 시점 또는 편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타 대학 동일 전공으로 편입한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편입한 대학에서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정함.

 ※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재학 중이던 기관이 폐교되어 동일 전공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

교과목 부적합 판정 시 유의 사항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필수이수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수강한 사람이 개인 자격 부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소명자료
교재, 강의 자료, 과제, 발표 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 수업 전반에 걸친 자료들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 과목명 및 영역 오기 등의 사유는 추후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소급 적용 가능함.



2005. 7. 28. 이후 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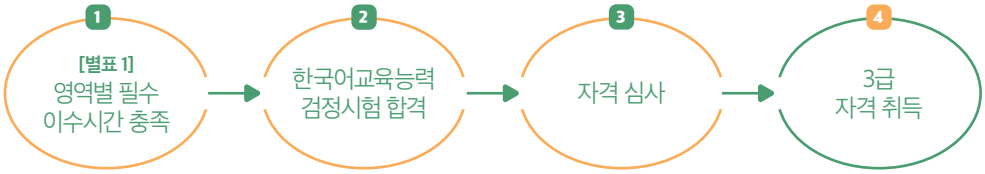
등급 및 유형	조건
3급 11번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자격 취득 절차

- 3급 11번



세부 심사 기준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영 역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1. 한국어학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46시간
4. 한국문화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20시간
합 계	120시간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인정함.
 ※ 1차(필기) 시험일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반드시 모든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기준 적용 해설

- 개인 자격 부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를 심사함.

 【주의】 적합 판정받은 교과목명과 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시(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이수증명서와 대조하여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교과목 확인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lp.korean.go.kr/certif) '교육기관 - 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하여야 함.

- 동일한 양성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이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불합격할 수 있음.

【불합격의 예】
양성기관이 3영역을 46시간으로 개설하였더라도 3영역 과목인 '한국어발음교육론'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 과목의 이수시간은 제외되어 3영역 필수이수시간 부족으로 불합격 판정함.



소명자료 관련 기준

- 행정적 착오 등으로 인해 제출하려는 이수증명서가 이전에 자격 심사 서류로 제출했던 이수증명서와 달라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소명자료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2005. 7. 28. 전 대학(원) 입학 후 학위 취득자

대상

- 20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과 5영역(한국어교육 실습)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영역 과목은 최소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 등급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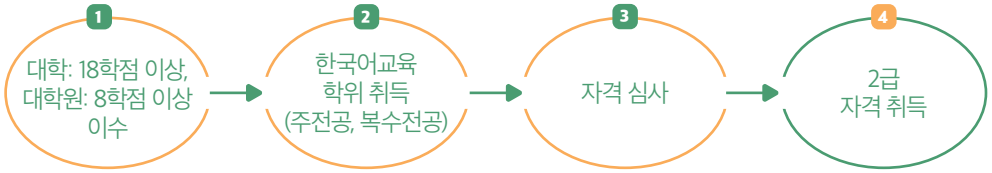
등급 및 유형	조건
2급 1번	20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15번	20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0~17학점** 또는 **대학원에서 6~7학점**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2번	2005. 7. 28. 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 취득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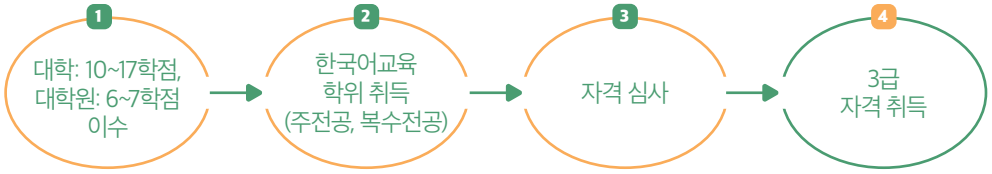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자격 취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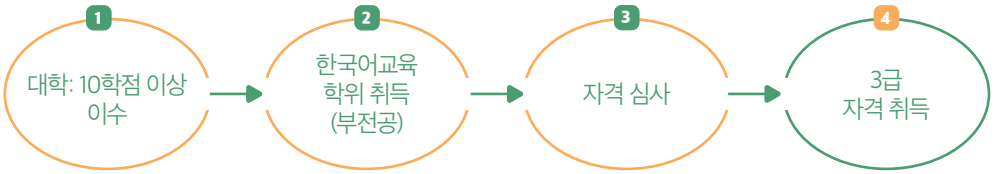
•2급 1번



•3급 15번



•3급 2번



세부 심사 기준

2005. 7. 28. 전 대학(원) 입학 후 학위 취득자(학위 취득은 2005. 7. 28. 이후라도 관계없음.)
- 단, 한국어교육 전공이 2005. 7. 28. 이후 개설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심사 기준: 3영역, 5영역 이수 학점 합산(단, 3영역 과목은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학사 학위 취득자	석·박사 학위 취득자
■ 주전공/복수전공자 - 18학점 이상 이수: 2급 - 10~17학점 이수: 3급 - 9학점 이하: 불합격 ■ 부전공자 - 10학점 이상: 3급	■ 주전공/복수전공자 - 8학점 이상 이수: 2급 - 6~7학점 이수: 3급 - 5학점 이하: 불합격

기준 적용 해설

- 신청자가 2005. 7. 28. 전에 입학하였더라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

 【예시】 2003년도(시행령 시행 이전) 입학자라 하더라도 2006년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개설되었을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기준으로 심사함.

- 5영역만으로 기준 학점을 채울 경우, 불합격 처리

 【주의】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교과목 부적합 판정 시 유의 사항은 16쪽 참조).

2005. 7. 28. 전 경력 요건자

대상

- 2005. 7. 28. 전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800시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조건(심사 기준과 동일)
3급 5번	2005. 7. 28. 전에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한국어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800시간 이상 강의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범위 및 기관의 범위는 27~28쪽 [참고 4] 참조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경력증명서 양식에 관한 내용은 25쪽 참조)

자격 취득 절차

- 3급 5번



2005. 7. 28. 전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자

대상

- 20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조건(심사 기준과 동일)
3급 6번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시행) 합격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인증서(합격증)

자격 취득 절차

- 3급 6번



2005. 7. 28. 전 양성과정 등록 후 이수자

대상

- 20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조건
3급 7번	- 20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2005. 7. 28. 이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20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하여, 2005. 7. 28. 이후에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세부 심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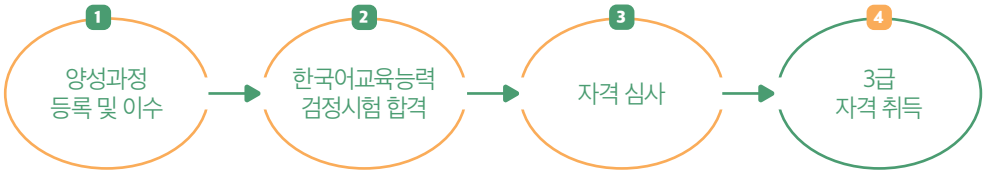
- 2005. 7. 28. 이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인정

 ※ 위 시험은 2006~2008년까지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2009년 이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가능

자격 취득 절차

- 3급 7번



나. 승급

대상

- 한국어교원 자격 2급 또는 3급을 취득한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조건
1급 12번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 +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 충족
2급 13번	학위과정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강의 기간 + 1,2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 충족
2급 14번	양성과정, 800시간 경력,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으로 3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 +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 충족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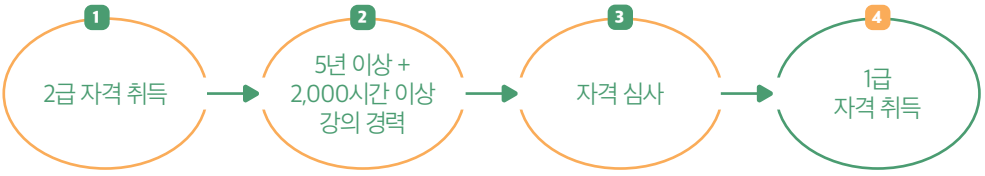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세부 심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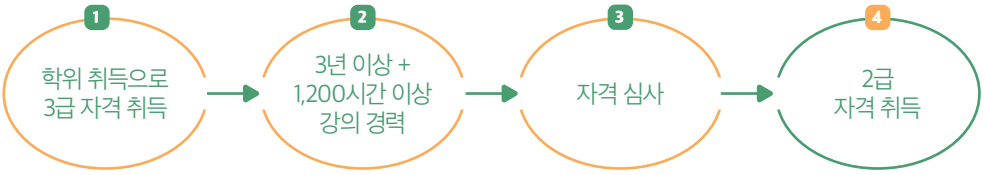
-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승급 심사 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일 이후의 강의 경력만을 인정함.
- 강의 경력은 법에서 정한 강의 기간과 강의 시수를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 취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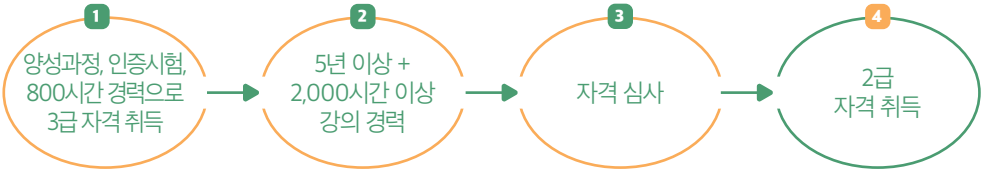
- 1급 12번



- 2급 13번



- 2급 14번



기준 적용 해설

-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의 강의 시간을 합산하여 심사함.
- 강의 기간 1년의 기준: 한 해(1. 1. ~ 12. 31.)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

【승급 불합격의 예】
2급 자격 취득일 이후 4년의 강의 경력 + 2,800시간
→ 자격 취득 후 강의 기간 1년 부족으로 불합격

양성과정으로 3급 자격 취득 후 5년의 강의 경력 + 1,800시간
→ 강의 시수 200시간 부족으로 불합격

경력증명서 양식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함.
-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해외 기관 경력은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함.
 ※ 현지어(영어)로 발급받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발급받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거나, 한국어와 현지어(영어)를 병기하여 발급받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공증 생략 가능함.
 ※ 단, 세종학당, 한국 문화원, 한국교육원은 국문본 경력증명서를 인정함.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경력의 경우, 해외 기관이 아닌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급받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국문본 경력증명서도 인정 가능함.
-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발급자 및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 연락처(담당자 휴대 전화 등 개인 연락처 불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 기관이 폐교되어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 서식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한 항목(연도별로 기재된 담당 과목명, 강의 시간, 강의 기간 등)이 폐교된 기관 발급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추가 증빙 서류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범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할 때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범위는 27~28쪽 [참고 4] 참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위탁받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지정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공문 등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경력 인정 교과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할 때 경력 인정 여부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수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할 것을 권고함.

 ※ 단, 과목명과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외국인 전용 과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참고 4 경력 인정 관련 기준 사항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범위

-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구성원(다문화가정 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함.

【주의】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21호>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 및 방문 한국어교육경력,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어교육경력도 인정 가능함. 단,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외 수업은 인정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위탁받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지정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공문 등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함.

참고 5 개인 심사 관련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50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영문) ※여권에 적힌 이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3.5×4.5㎝)
	②생년월일	③국적	
	④주소 ※ 자격증 발급 시 수령할 수 있는 주소		
	⑤휴대 전화 (전화)	⑥전자 우편	
	⑦신청 등급 ()급-()번	⑧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기재)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일: 취득 유형:()급 ()번	

⑨학력	부터	까지	한국어교육 분야 학력 ('학교명과 학과명' 또는 '학교명과 전공명' 기재)	
	. . .	. . .		
⑩양성과정	부터	까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 시간
	. . .	. . .		

⑪ 한국어 교육 근무 경력	부터	까지	근무 기관	직위(급)
	. . .	. . .		
	. . .	. . .		
	. . .	. . .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작성 시 유의 사항

- ④번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게 되오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 ⑧번 칸부터 ⑪번 칸까지는 해당자만 적으십시오.
- ⑪번의 직위(급) 칸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등급	해당 규정	붙임 서류
1급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급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성적증명서(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3급	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6.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가.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성적증명서(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8.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9.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국어 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10.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국어 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국어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역	영역별 이수 시간
이수 내용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4. 한국문화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이수 시간			()시간				

위 사람은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 우편

210mm×297mm[백상지(80g/㎡)]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Caree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도 (Year)	학기 (Semester)	담당 과목명 (Subject)	강의 시간 (Lecture Hours)	강의 기간 (Period of Lecture)	비고 (Remarks)
강의 경력 (Lecturing Experience)						
강의 시간 합계 (Total Lecture Hours)			() 시간(hours)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tatements above are true and correct.

년 월 일
(Date of Issue . . .)

발급 기관의 장
(Head of Organization) 직인 (Official Seal)

담당자(Supervisor)		
발급 기관명(부서명) (Issuing Organization's Name (Department))		주소(Address)
담당자 이름 (Full Name)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자 우편(E-mail)

210mm×297mm [백상지 80g/㎡]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2. 자주 하는 질문
3. 한국어교원 관련 누리집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가. 국어기본법

(법률 제7368호, 2005. 1. 27., 제정 /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1. 26.]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73호, 2005. 7. 27., 제정 / 대통령령 제3220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1. 30.>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 11. 30., 2017. 9.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30.>

[전문개정 2012. 8. 22.]

제13조의2(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등의 동의가 있으면 그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 8. 2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관련)

번호	영 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 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 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 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 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 8. 2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3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9. 19.>

한 국 어 교 원 자 격 증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번 호

Certificate Number

이 름

Full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자 격

Qualification Grade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Korean Language Teach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직인

1. 검정 종별: 무시험검정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 호 목 자격기준
3. 수여 조건: 해당 없음

210mm×297mm[백상지(150g/㎡)]

다.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 12. 29.,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30.]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30.>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1.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12. 12.>

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학·언어학·국어교육·외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1.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1. 30.>
[제목개정 2017. 12. 12.]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등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1. 30.>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30.>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②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1. 과목별 강의계획서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제2조 관련)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방송·통신·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50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영문) ※여권에 적힌 이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3.5×4.5㎝)
	②생년월일	③국적	
	④주소 ※ 자격증 발급 시 수령할 수 있는 주소		
	⑤휴대 전화 (전화)	⑥전자 우편	
	⑦신청 등급 ()급-()번	⑧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기재)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일: 취득 유형:()급 ()번	

⑨학력	부터	까지	한국어교육 분야 학력 ('학교명과 학과명' 또는 '학교명과 전공명' 기재)	
	. . .	. . .		
⑩양성과정	부터	까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 시간
	. . .	. . .		

⑪ 한국어 교육 근무 경력	부터	까지	근무 기관	직위(급)
	. . .	. . .		
	. . .	. . .		
	. . .	. . .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작성 시 유의 사항

- ④번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게 되오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 ⑧번 칸부터 ⑪번 칸까지는 해당자만 적으십시오.
- ⑪번의 직위(급) 칸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등급	해당 규정	붙임 서류
1급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급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졸업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성적증명서(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3급	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6.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가. 졸업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성적증명서(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8.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9.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국어 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10.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국어 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정
◀ 자격증 발송	▼ 발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이수 내용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국어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역	영역별 이수 시간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4. 한국문화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이수 시간			()시간				

위 사람은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 우편

210mm×297mm[백상지(80g/㎡)]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Caree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도 (Year)	학기 (Semester)	담당 과목명 (Subject)	강의 시간 (Lecture Hours)	강의 기간 (Period of Lecture)	비고 (Remarks)
강의 경력 (Lecturing Experience)						
강의 시간 합계 (Total Lecture Hours)	() 시간(hours)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tatements above are true and correct.

년 월 일
(Date of Issue . . .)

발급 기관의 장
(Head of Organization) 직인

담당자(Supervisor)		
발급 기관명(부서명) (Issuing Organization's Name (Department))		주소(Address)
담당자 이름 (Full Name)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자 우편(E-mail)

210mm×297mm [백상지 80g/㎡]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4일

신청인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전자 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유형	() 급 () 번
	자격증 번호	
	취득일	

재발급 신청 사유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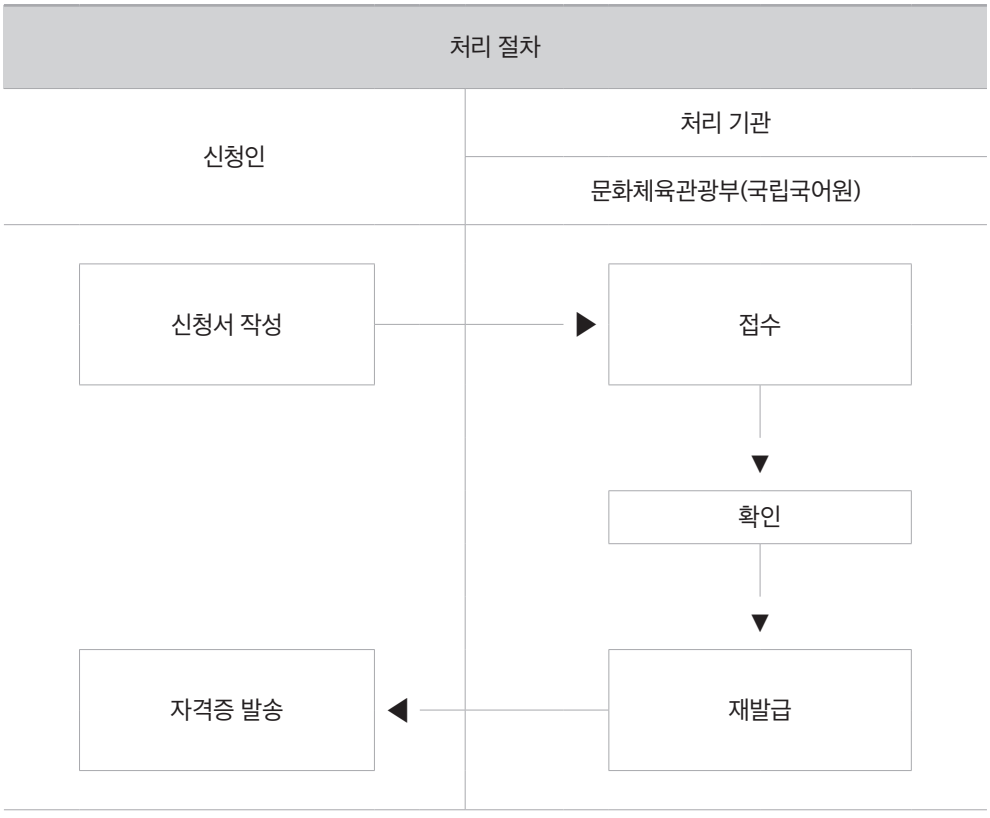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재발급
자격증 발송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청 기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	

신청 과목명			과목의 해당 영역	() 영역
			과목 개설 시기	년 월
과목 구분	[] 학부 전공과목 [] 석사 전공과목 [] 박사 전공과목 [] 석사·박사 통합과정 전공과목 [] 학부 연계 전공과목		[] 다른 전공과목 [] 교양과목 [] 전공 교직과목 [] 기타 (직접 기재:)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 강의식 [] 토론식 []실습 [] 기타 (직접 기재:)		
	강의 주요 내용			
	학점	() 학점		
	기타			
주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부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위	성명	학력 및 주요 경력	

첨부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청과정	[] 대학(학부 과정) [] 학점은행제 [] 대학원(석사·박사 과정)		
신청기관		과정(전공) 개설 시기	년 월 일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1. 한국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4. 한국문화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과목 수	()개			총 학점	()학점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청 기관명		과정명	
과정 유형	[] 주간 과정 [] 야간 과정 [] 단기 집중 과정 [] 방학 과정 []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 정원		교육 기간	
수업 일수/주		수업 시간대	
주 소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한국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4. 한국문화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과목 수	()개			총 이수 시간	()시간		

첨부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학위과정

Q.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였는데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신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이수하셔야 하며,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내국인에게 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교수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과는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학문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이수한 과목명이 예시 과목명과 다를 경우에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목의 영역 판정은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1~5영역 중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이라고 판단하여 개설하였더라도 강의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영역별 교과목 개설 기준과 다를 경우, 해당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의 인정받은 필수이수학점 교과목 목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lp.korean.go.kr/certi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대학원생인데, 학부의 한국어교육 전공과목을 이수해도 인정되나요? 또 대학원 과정의 선수 과목도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과정 내에서 이수한 과목만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선수 및 보충 과목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원) 수료이거나 졸업유예, 졸업 예정인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신청 시 졸업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료자 및 졸업 예정자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졸업을 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이 완료된 후에만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Q. 부전공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네,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하여 졸업하였더라도 전공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복수전공)하였는데 필수이수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은 충족하는데 이때 3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전공(복수전공)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급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전공자가 주전공(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 2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편입학한 경우, 심사 시에 입학 시점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에 편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으로 편입학했다면 입학 연도가 2006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 저는 2004년에 입학하여 2006년에 개설된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시행령 시행(2005. 7. 28) 이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시행(2005. 7. 28) 이전 입학자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개설일이 시행령 시행 이후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 외국 국적자의 경우도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반드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Q.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안내된 교육기관의 교과목은 모두 현재 수강할 수 있는 개설 교과목인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측에서 현재 운영하는 교과목뿐 아니라 추후에 개설할 교과목을 미리 심사받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의 현 개설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평가 인정을 받아야 개설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신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외국 대학(원)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였는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적 제한이 있나요?

성적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F학점의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학위과정(한국어교원 양성과정)

Q.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데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나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학력 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단기 양성기관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를 원하시는 양성기관에 수강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 등록해야 하나요?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기관과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사전에 확인(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 부여에 문제가 없으나 확인받지 않은 기관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신청자는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성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확인한 뒤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기관 정보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lp.korean.go.kr/certif) '교육기관 - 비학위 과정(양성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심사에 합격한 분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Q. 양성과정 이수 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도 되나요?

양성과정 이수 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검정시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양성과정 1~5영역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이수하여도 되나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양성과정 심사를 받은 한 기관에서 1~5영역의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 저는 2004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했는데 120시간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양성과정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 또는 수료한 경우,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성과정은 2년 안에 수료해야 하나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Q. 양성과정을 수료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및 합격까지 유효기간이 있나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을 응시하는 데 있어 그 기간에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성과정 수료 후 언제든지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 단, 오랜 시일이 지난 후 검정시험에 합격하신 경우, 양성과정을 이수한 기관에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자격 취득이 어려우므로 이수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Q. 양성과정을 이수한 기관이 현재는 폐지된 상태인데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양성과정 이수 당시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인 경우 가능합니다.

Q.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까지 합격하셔야 3급 자격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의 한국어교육경력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이때의 경력은 추후 승급 심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 및 승급

Q.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동안 강의를 하여 한국어교육경력 2,000시간을 충족하였습니다. 1급으로 승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승급 심사 신청을 할 경우 자격 취득일 이후 '강의 기간'과 '강의 시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총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불합격 됩니다.

Q. 3급 자격을 취득했는데 1급까지 승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승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일 이후 '강의 기간'과 '강의 시수'를 충족한다면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한국어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어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됩니다.

Q. 강의 경력을 증명할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외 기관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서식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현지어 또는 영문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또한 현지어(영어)로 발급받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발급받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거나, 한국어와 현지어(영어)를 병기하여 발급 받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공증 생략이 가능합니다.

Q. 강의 기간 1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 해(1. 1. ~ 12. 31.)에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하거나 15주 이상 강의를 한 것을 1년의 강의 경력으로 계산합니다.

Q. 저는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강의 경력을 합산하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의한 기관과 강의 내용이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면, 한국어교육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봉사활동도 강의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내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말하기·듣기·쓰기 등의 수업을 한 경력이라면 봉사활동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심사 신청 및 기타

Q.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 학점(시간) 단축 등의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교육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을 거쳐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며, 이수 학점(시간) 단축 등의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Q.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했는데 자격증에 '무시험 검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심사 단계에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무시험 검정'이라고 기재됩니다.

Q. 심사 신청 후 합격자 발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신청 마감일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약 5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접수 기간은 보통 열흘이며, 접수 후 약 4~5주 정도 후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열린 후 약 1~2주 뒤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Q.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송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합격자 발표 후 대략 4주 후에 실물 자격증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자격증을 일괄 제작하여 발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Q. 심사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 신청 기간 내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심사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심사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Q. 우편으로 심사 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 심사신청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나요? 또 심사신청서에 사진이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심사신청서는 흑백으로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심사신청서에 사진이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명사진을 직접 심사신청서에 붙여 주시면 되며, 사진을 출력하여 심사신청서에 붙이셔도 됩니다.

Q. 우편으로 심사 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 개인 자격 부여 신청 서류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개인 자격 부여 신청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담당자 앞

Q. 서류 도착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류 도착 여부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로그인하신 후,
'내 정보 관리 -심사 신청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중(서류 제출 요망): 온라인 심사 신청만 완료된 상태
- 심사 중(서류 접수 완료): 제출 서류가 국립국어원에 도착하여, 심사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상태로 필수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 서류 누락: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상태
- 심사 완료: 심사가 완료되어 결과가 발표된 상태

진행 상태란이 심사 중(서류 접수 완료)으로 바뀌어 있으면 심사 신청 접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를 기간 내에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Q. 서류 제출을 했는데 심사 결과가 미처리로 나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심사 결과 발표 날짜가 지나기 전까지는 모든 심사 신청자들의 심사 결과는 미처리로 표시됩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미처리로 표시될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담당자(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개인 자격 부여 접수가 오늘이 마감인데, 인터넷 접수만 하고 서류를 아직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우편 발송을 하면 마감 날짜까지 서류가 국립국어원으로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감 날짜 우체국 소인이 날인되어 있으면 접수 기간이 지나서 서류가 도착했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발송해 주셨기 때문에 접수됩니다. 서류 접수는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착 날짜와는 관계없습니다(단, 서류 도착이 마감 날짜보다 3주 이상 지연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EMS 등 빠른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자격증을 재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로그인하신 후, '자격증 - 재발급 신청'에서 먼저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만 원권(전자수입인지 누리집(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가능)을 직접 첨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하신 후, 수입인지 1만 원권(우체국, 시중 은행에서 구매 가능. 또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직접 구매 후 출력)을 신청서에 부착 또는 첨부하신 후,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개명, 생년월일 정정, 국적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기존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 재발급된 자격증은 착불 택배로 발송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은 원칙적으로 착불 발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택배로 발송됩니다.).

Q. 자격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로그인하신 후, '자격증 - 자격확인서 발급'에서 자격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심사신청서를 출력했을 때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는 칸이 있는데 제가 신청을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심사신청서상 '해당 없음' 표기는 신청하신 자격 신청 유형과 관련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출력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 다.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항목과 관련한 경력, 학력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기재하지 않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저는 현직 한국어교사입니다.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수강을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현직 한국어교사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현장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강의실습에서는 담당 교수 또는 현장 실습 지도자의 지도 및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Q. 국외 거주 수강생들은 어떻게 현장 실습을 하나요?

국외 거주 수강생들은 국외에 있는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현장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과 실습 기관이 현장 실습 협약을 맺어 운영해야 하므로 양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록 3

한국어교원 관련 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lp.korean.go.kr/certif)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 및 심사 신청에 관한 안내 확인
- 심사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질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lp.korean.go.kr/kcenter)

-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육 자료 및 다양한 한국어교육 관련 정보 확인
- 한국어교원을 위한 온라인 강좌 수강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https://kcorpus.korean.go.kr)

- 국립국어원에서 수집·구축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 검색
-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축한 말뭉치 자료의 통계 확인

세종학당재단 누리집(https://www.ksif.or.kr)

-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에 관한 내용 확인
-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자료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누리집(https://www.cb.or.kr)

- 학점은행제에 대한 설명과 학위 취득 안내 확인
-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및 각종 증명서(학사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https://www.q-net.or.kr/site/koreanedu)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안내 및 시험 일정 확인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및 시험 관련 자료 확인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필기, 면접) 발급

국립국어원 2023-04-0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67-01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23년 12월 발행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https://klp.korean.go.kr/certif

전 화 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디자인 두인 (063-247-5425-6)

비매품/무료
15370

9 791195 974061
ISBN 979-11-959740-6-1 (PDF)